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.

2. 근거 법령

-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-17호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에 의한 증원.

3. 제안이유

-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이천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4. 주요 골자

- 집행기관의 정원 754를 796으로 하여 42명 증원.
- 총계란 770을 812로 함.
※ 총 42명 증원(일반직 35명, 기능직 7명)

5. 검토 의견

-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고시 제 2003-17호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2명(일반직 35명, 기능직 7명)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, 의회사무국 정원의 경우 3명을 증원 요구하였으나, 단 1명도 증원 없이 집행부만 42명 증원하려는 개정안 임.